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서식 개정	(신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	갱신	2014.04.30 기준 작성	2015.04.15 기준 작성
제 2 부. 8.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명확화	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2. (생략) (신설)	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2. (현행과 같음)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갱신	[직전 회계년도 :2013.03.27~ 2014.03.26] 기준 작성	[직전 회계년도 :2014.03.27~ 2015.03.26] 기준 작성
제 2 부. 14. 가. 이익배분 방법 추가	이익 배분 방법 추가	(1)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부. 14. 나.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갱신	제2기(2013.03.27 - 2014.03.26) 기준 작성	제3기(2014.03.27 - 2015.03.26) 기준 작성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갱신	2014.04.30 기준 작성	2015.04.15 기준 작성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갱신	2013.12.31기준 작성(요약재무) 2014.04.30기준 작성(운용자산)	2014.12.31기준 작성(요약재무) 2015.04.15기준 작성(운용자산)
제 5 부. 2. 가. 의무해지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신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 5 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갱신	2014.04.30 기준 작성	2015.04.15 기준 작성
제 5 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서식 변경	(신설)	해당 내용 기재
제 5 부.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서식 변경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서식 변경	(신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 5. 운용전문인력	갱신	<u>2014.04.30</u> 기준 작성	<u>2015.04.15</u> 기준 작성
I . 6. 투자실적추이	갱신	<u>2014.04.30</u> 기준 작성	<u>2015.04.15</u> 기준 작성
II . 1. 보수 및 수수료	갱신	[직전 회계년도 : <u>2013.03.27~ 2014.03.26</u>] 기준 작성	[직전 회계년도 : <u>2014.03.27~ 2015.03.26</u>] 기준 작성
II . 2. 과세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갱신	<u>제2기(2013.03.27 - 2014.03.26)</u> 기준 작성	<u>제3기(2014.03.27 - 2015.03.26)</u> 기준 작성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 변경 대비표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투자대상 명확화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이익분배)	이익분배 방법추가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u>현금 또는 새로이</u>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① (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4. (생략) (신설)	① (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